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110호 2015. 11. 09(월)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15 - 1341호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1
- 남원시 공고 제 2015 - 1352호 도로공고..... 14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공고 제2015-1341호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1. 제정이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보조금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로당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방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안 제6조)
- 다. 경로당 보조금 반환 및 수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안 제9조)
- 라. 경로당 운영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지방재정법」, 「건축법」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1. . ~ 2015. 11. .(20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별첨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 완료

4. 기타사항

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여성가족과(☎063-620-61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생활·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교환,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설치에 따른 지원과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두레사랑방”이란 주간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기능보강사업”이란 신축, 증축·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 등의 부지는 등기부에 마을회 및 노인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단, 공동주택은 제외)

2.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회원이 읍·면지역은 10명 이상, 동지역은 20명 이상인 경우

3. 노인회 구성 및 회장 선발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회의록과 등록회원 전원 서명 날인된 서류가 있는 경우

4. 한 마을에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마을 경로당과의 이격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② 두레사랑방은 위 설치기준을 갖추고 마을 주민의 협력으로 자원봉사자가 3명 이상, 입주희망자가 5명 이상인 경로당 중 선발을 통해 지원한다.

제4조(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3. 경로당 시설의 기능보강(신축·증축·개축, 리모델링, 장비보강 등) 사업비.
다만, 임차건물은 제외하며 별표의 지원내역 범위에 한정한다.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5. 경로당 그룹-홈 두레사랑방 설치·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모든 운영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기능보강사업 지원방침) ① 시장은 기능보강사업 지원 시 설계·감리비 및 건축인허가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기능보강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설계서를 기초하여 지원한다. 다만, 장비 보강은 제외한다.

③ 기능보강사업은 3년 내 같은 경로당에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④ 기능보강사업으로 실외에 단독 설치하거나, 설치된 화장실, 창고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물은 지원하지 않는다.

⑤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건축
2. 신축
3. 기능보강사업(균열, 누수에 따른 개보수)
4. 장비보강

제6조(기능보강사업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설치 지원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축은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리·분리·통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정하여 1개소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재건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실시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된 경우
2. 재해, 재난, 화재 등으로 보수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이 편입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지원계획)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제8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9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프로그램 개발 등)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전담관리자를 배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공개 등) ① 경로당 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남원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보조금 금전출납부에 정리하고 지출사항은 정산서에 지출결의서를 붙여 읍·면·동 장에게 제출하며, 읍·면·동 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경로당 운영 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정산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운영비를 지원받은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신축 및 재건축 지원기준(제6조 관련)

구 분	노인인구수	연면적	비 고
신축 및 재건축	50명 이상	100 제곱미터 이하	- 면적과 관계없이 지원금액은 1억 원에 한정함
	25명 이상	85 제곱미터 이하	
	25명 미만	75 제곱미터 이하	

기능·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

구 분	지원가능 내역	비 고
기능보강 (증축·개축, 개보수 등)	증축, 개축, 리모델링	- 금액 300만원 이상 (1개소 당)
장비보강 (물품구입 등)	에어컨, tv,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 금액 100만원 이상 (1건 당)

건축 관련 용어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2)

-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개보수: 현존 구조체를 개조 보수하는 작업

보 수: 구조물이나 설비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수리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지원현황

- 비용발생 요인 : 남원시 전체 인구 중 23%를 차지하는 노인 대상 지원사업 중 경로당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운영비 및 난방비, 기능보강사업, 두레사랑방 운영 등)
- 비용추계의 전제 : 노인인구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신·증축, 개·보수 등), 경로당 그룹-홈 「두레사랑방」 운영,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비 등.

2. 관련조문

- 조례(안) 제4조(운영비등 지원)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비용 추계결과

- 2012년 ~ 2014년도 경로당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운영비 등(①)	특별냉·난방 비 양곡비(②)	기능보강 사업비(③)	두레 사랑방(④)	비고
재원내역	도·시비	국·도·시비	시비	시비	
2012	920	861	1,389		- 2011년 이후 운영비 등 동결 - 2011년 이후 기능보강 사업 대상 중 일부 도비 미지원
2013	920	929	1,003		
2014	920	935	1,422	69	

- 2011년 이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대상 중 일부가 도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기존 설치된 경로당에 대한 유지보수 시 자체예산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예산

- 2015년 : 3,606백만원(①920백만원+②935백만원+③1,607백만원+④144백만원)
- 2016년 : 3,878백만원(①920백만원+②935백만원+③1,807백만원+④216백만원)
- 2017년 : 4,078백만원(①920백만원+②935백만원+③2,007백만원+④216백만원)
- 2018년 : 4,278백만원(①920백만원+②935백만원+③2,207백만원+④216백만원)
- 2019년 : 4,478백만원(①920백만원+②935백만원+③2,407백만원+④216백만원)

4. 재원 조달방안(2015년 기준)

구분	총금액	국비	도비	시비
계	3,607,005	233,806	511,485	2,861,714
운영비 등	920,780	0	184,156	736,624
특별내·난방비, 양곡비	935,225	233,806	327,329	374,090
기능보강사업	1,607,000	0	0	1,607,000
두레사랑방	144,000	0	0	144,00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3,607,005	3,879,005	4,079,005	4,279,005	4,479,005	20,323,025
국 비		233,806	233,806	233,806	233,806	233,806	1,169,030
도 비		511,485	511,485	511,485	511,485	511,485	2,557,425
시 비		2,861,714	3,133,714	3,333,714	3,533,714	3,733,714	16,596,570
세 출		3,607,005	3,879,005	4,079,005	4,279,005	4,479,005	20,323,025
경로당 운영비 지원		920,780	920,780	920,780	920,780	920,780	4,603,900
특별냉·난방비, 양곡비		935,225	935,225	935,225	935,225	935,225	4,676,125
기능보강사업		1,607,000	1,807,000	2,007,000	2,207,000	2,407,000	10,035,000
두레사랑방		144,000	216,000	216,000	216,000	216,000	1,008,000
재원 조달		3,607,005	3,879,005	4,079,005	4,279,005	4,479,005	20,323,025
의존 재원	소 계	745,291	745,291	745,291	745,291	745,291	3,726,455
	보조금	745,291	745,291	745,291	745,291	745,291	3,726,455
자체 수입	소 계	2,861,714	3,133,714	3,333,714	3,533,714	3,733,714	16,596,570
	세외수입	2,861,714	3,133,714	3,333,714	3,533,714	3,733,714	16,596,57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남원시 공고 제 2015 - 1352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15 -19	남원시 월락동 385	김*선	2015-건축과- 신축허가-57	34.8	6	195	남 원 시 월 락 동 ***	134	김*자
							남 원 시 월 락 동 ***	61	김*자